

의안번호	2212229
의 퇴 인	김은혜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계번호	25E446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자동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구입 관련 개별소비세를 2026년 한시 감면할 경우, 재정수입은 2026년 2조 754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시 세수효과: 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6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20,754	-20,754	-20,754
- 개별소비세	-14,513	-14,513	-14,513
- 교육세 ¹⁾	-4,354	-4,354	-4,354
- 부가가치세 ²⁾	-1,887	-1,887	-1,887

주: 1) 교육세는 부가세로서 개별소비세액의 30%에 대해 부과

2)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(개별소비세액, 교육세액 등 포함)의 10%에 대해 부과되며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금액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9의4 (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)	○ 자동차 구입 관련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- (현행)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액 70% 감면 - (개정안)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액 70% 감면	조세지출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9의4(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기간은 2026~2030년 5년간으로 설정
 - 2025년 통과된 개정안이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동 이후부터 판매되는 승용자동차에 적용
-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승용차 소매판매액지수¹⁾ 및 세율인하 기간·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전제
 - 추계기간 동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은 2025년까지의 실적치를 기반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주요 거시경제 변수(실질 국내총생산 등) 전망(2025.9.)을 활용하여 추정
 - 개정안의 감면 한도(100만원)²⁾는 본 추계에서는 미고려
 - － 동 한도를 초과하는 자동차 가격(국내차 3,484만원, 수입차 2,857만원)³⁾은 2024년 평균 판매가격(4,310만원, 수입차 8,500만원)⁴⁾보다 낮은 수준
- 추계기간 동안 국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시 기준판매율(18%)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
 - 개별소비세 기준판매율제도⁵⁾가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어 국산 승용자동차 과세표준이 18% 인하되며 향후 추계기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
 - － 기준판매비율은 3년간 적용되며⁶⁾ 3년 임기의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동 비율의 적용 방법 및 범위 등을 결정⁷⁾
- 개정안의 제도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미반영
 - 개정안에 따른 자동차 구입 관련 세제 감면에 따라 동 구입대수 증가 등의 가능성은 있으나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제도변화에 따른

1) 국가데이터처, 「서비스업동향조사」, 1995~2025

2)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의4제3항

3) 국내차: 감면한도(100만원)/[개별소비세자동차세율변화(5%-1.5%)×(1-개별소비세기준판매율(18%))], 수입차: 감면한도(100만원)/개별소비세자동차세율변화(5%-1.5%)

4)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, 「2024년 자동차 내수시장 분석」, 2025.1

5)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차량 반출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(유통 관련 판매비·이윤: 18%) 만큼 차감하는 제도

6)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제8조의2제2항

7) 「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」(국세청훈령 제2564호) 제6조 및 제9조

행태변화는 미반영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1) 개별소비세 승용차분 감면 제도 개요

□ 2020년 3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대응 세제지원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 및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 목적에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을 통해 자동차 구입 관련 개별소비세 70% 감면 정책 시행

- 동 4개월 기간 개별소비세 자동차분 세율 1.5%(5→1.5%, 70% 인하) 적용으로 승용자동차, 캠핑차, 이륜차 등 신차 구입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감면(143만원 한도) 실시

- 부가세는 교육세(개별소비세액의 30%), 부가가치세(개별소비세액·교육세액 등 공급가액의 10%)이며 동 세목별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, 교육세 30만원, 부가가치세 13만원

- 2020년 4개월간 감면 실적은 개별소비세 4,678억원, 교육세 1,404억원 등 6,082억원⁸⁾

□ 2020년 6월말 상기 한시적 감면조치 종료 이후에도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0% 인하 정책 시행

- 2020년 7월초부터 2023년 6월말까지 및 2025년 1월초부터 2025년 12월말까지 총 2년간 개별소비세 자동차분 세율 3.5% 적용(5% → 3.5%, 30% 인하)

2) 추계방법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는 정부가 통계로 집계한 2020년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관련 조세지출 실적을 바탕으로 하여,⁹⁾ 추계기간 동안 국내 및 수입 승용차 소매판매액지수 및 세율인하 기간의 변화폭을 반영하여 추계

- 2020년(3월초부터 6월말까지 4개월) 개별소비세 감면 실적 4,678억원에 대해,

8) 정부, 「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」, 2021.9.

9)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개정 관련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세수감소에 대한 정부 통계는 현재 미집계

동 기간 국내·수입 승용차 소매판매액지수 평균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
국내차 감면 2,490억원 및 수입차 감면 2,188억원으로 조세지출 규모 추정

- 국내차 2,490억원 = 4,678억원 × 116.1 / (116.1 + 102.0)

- 수입차 2,188억원 = 4,678억원 × 102.0 / (116.1 + 102.0)

- (국내차) 국내 승용차 소매판매액지수 전망치(2026년 112.4), 서울인하
기간(2026년 1월초부터 12월말까지 12개월) 등의 증감률 및 기준판매율에
따른 과세표준 인하(18%↓)를 적용하여 관련 개별소비세 조세지출
5,933억원으로 추계

- 국내차 5,933억원 = 2,490억원 × (112.4/116.1) × (12/4) × 82%

- (수입차) 수입 승용차 소매판매액지수 전망치(2026년 133.3), 서울인하
기간(2026년 1월초부터 12월말까지 12개월) 등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관련
개별소비세 조세지출 8,580억원으로 추계

- 수입차 8,580억원 = 2,188억원 × (133.3/102.0) × (12/4)

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구입 관련 개별소비세를 2026년 한시 감면할 경우,
재정수입은 2026년 2조 754억원 감소 예상

[표 2] 자동차 구입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시 세수효과: 2026년

(단위: 억원)

	2026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20,754	-20,754	-20,754
- 개별소비세	-14,513	-14,513	-14,513
- 교육세 ¹⁾	-4,354	-4,354	-4,354
- 부가가치세 ²⁾	-1,887	-1,887	-1,887

주: 1) 교육세는 부가세로서 개별소비세액의 30%에 대해 부과

2)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(개별소비세액, 교육세액 등 포함)의 10%에 대해 부과되며 지방소비
세를 포함한 금액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